

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1. 입법의 필요성

① 종전의 제도운영 실태

- 외국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국내사무소 설치 및 출자가 허용되지 않는 등 우리 회계서비스 산업의 대외적인 개방 정도가 미약

② 입법추진배경

- 국내시장에 개방과 경쟁을 도입하여 주요서비스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
- . 공익적 부분과 산업적 부분을 분리시켜 산업적 부분에 대한 육성과 개방정책을 과감히 추진(대통령말씀, 대외경제위원회 및 경제민생 점검회의, 2004.12)
- 대외경제위원회 주관으로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회계분야를 포함한 「서비스시장 개방종합계획안」을 2005 년말 까지 마련하고,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기로 하였음
- 회계서비스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 중이며, 1 단계로 2007 년부터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국내사무소 설치를 허용할 계획

③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

- 시장 개방 시 국내 서비스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, 해외 선진기법의 전수와 경쟁 촉진으로 회계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

④ 입법에 관한 관련단체 등의 의견

- 관련업계와 2005 년 중 수차례에 거쳐 협의한 결과, 정부개방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 (다만, 부작용 해소방안 등에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함)

2. 입법요지

○ 외국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국내사무소 설치허용(2007년 이후)

- 해당 자격취득국가 또는 국제적 회계제도 자문을 허용
(국내회계사와의 합작, 고용은 제외)

○ 국내회계법인의 외국 공인회계사 고용을 허용(2007년 이후)

(감사서비스는 제외)

○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회계법인에 대한 출자를 단계적으로 허용(2011년 이후)

- 회계법인이 행하는 감사서비스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최초 개방 시에는 50%미만으로 출자한도를 제한

3. 추진일정

- ①입안 : '06. 4 월
- ②관계기관협의(금융감독위원회) : '06. 5 월
- ③입법예고 : '06. 5 월
- ④위원회 심의.의결 : '06. 6 월
- ⑤법제처 제출 : '06. 6 월
- ⑥국회제출 : '06. 8 월

⑦국회통과 : '06. 9 월

⑧공포 : '06. 9 월

⑨시행 : '06.12 월

4. 입법형식 : 부분개정

5. 예상되는 문제점

○ 그 동안 연구용역 수행, 간담회 등을 통해 알려진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 없음

6. 정기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

○ 해당사항 없음

7. 관계법령의 제.개정 필요 여부 : 불필요

8. 하위법령 정비계획

①입안 : '06. 8 월

②관계기관협의 : '06. 9 월

③입법예고 : '06. 9 월

④규제개혁위원회 심의.의결 : '06. 10 월

⑤법제처 제출 : '06. 10 월

⑥차관회의.국무회의 : '06. 11 월

⑦공포 : '06. 12 월

⑧시행 : '06. 12 월

9.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

- 소관부서 :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
- 실무책임자 : 과 장 최상목(☎ 2110 - 2433)
사무관 양창호(☎ 2110 - 2437)

10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